

最 低 賃 金 法 案 (代案)

議 案	
番 號	

提案年月日 : 1986. 12. .
提 案 者 : 保健社會委員長

1. 代案의 提案經緯

- 가. 最低賃金法案이 1986 年 3 月 11 日 鄭始鳳議員外 20 人으로부터 發議된 후, 同年 10 月 23 日 沈完求議員外 88 人이, 또한 同 年 11 月 20 日에는 姜昌熙議員外 36 人이 각각 發議하여 3 件의 議案이 當委員會에 回附되어 왔음.
- 나. 當委員會에서는 鄭始鳳議員外 20 人이 發議한 法律案에 대해서는 1986 年 6 月 21 日 第 130 回 國會(臨時會) 第 4 次委員會에서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고, 1986 年 4 月 7 日 第 129 回 國會(臨時會) 第 5 次委員會에서 構成된 바 있는 勞動關係法案審查小委員會에 審查報告토록 委任하였고, 沈完求議員外 88 人, 그리고 姜昌熙議員外 36 人이 각각 發議한 法案에 대해서는 1986 年 11 月 27 日 第 131 回 國會(定期會) 第 12 次委員會에서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들은 후, 역시 이미 構成된 바 있는 勞動關係法案審查小委員會에 回附하여 審查報告토록 하였음.

다. 勞動關係法案審查小委員會는 1986年12月10日 同法案에 대하여
眞摯하게 審查한 結果 同一한 題目的 法律의 制定에 대해
서 3件의 法案으로 提出되었으므로, 各 法案의 內容을 統
合하여 單一案을 마련, 1986年12月10日 第14次委員會에
審查報告하여 이를 採擇함으로써, 3件의 原案을 각각 本會議에 附
議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委員會의 代案으로 本法案을 提案하
게 되었음.

2. 代案의 提案理由

勤勞者賃金의 最低水準을 國家가 法的으로 保障함으로써 低賃
金勤勞者의 生活安定을 圖謀하여 勞動力의 圓滑한 再生產과
質的 向上을 期하고 國民經濟의 健全한 發展에 이바지하려는
것임.

3. 主要骨子

- 가. 適用範圍는 勤勞基準法의 適用範圍와 同一하게 함.(案 第3條)
- 나. 最低賃金의 決定基準은 勤勞者의 生計費, 類似勤勞者의 賃金 및
勞動生產性을 고려하여 決定함.(案 第4條第1項)
- 다. 最低賃金은 事業의 種類別로 정함.(案 第4條第2項)
- 라. 最低賃金의 決定單位는 月給, 週給, 日給으로 정하되 時間給
으로도 이를 표시하도록 함.(案 第5條)

- 마. 18 歲未滿者에 대한 最低賃金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, 다만, 入社하여 6月이 經過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. (案 第 5 條第 2 項)
- 바. 最低賃金은 勞動部長官이 最低賃金審議委員會가 審議·議決한 最低賃金案에 따라 每年 決定하도록 함. (案 第 8 條)
- 사. 最低賃金審議委員會의 最低賃金案에 대한 勞動部長官의 再審議 要請權 및 勞·使 代表의 異議提起權을 둠. (案 第 8 條第 3 項 및 第 9 條)
- 아. 勞動部에 最低賃金審議委員會를 두고 필요한 경우에 事業種類別 專門委員會를 둘 수 있도록 함. (案 第 12 條 및 第 19 條)
- 자. 最低賃金審議委員會는 勞·使·公益代表 각 9人으로 構成하고 3人的 特別委員을 둘 수 있도록 함. (案 第 14 條 및 第 16 條)
- 차. 最低賃金審議委員會에는 事務局과 研究委員을 둠. (案 第 20 條)
- 카. 最低賃金을 위반한 使用者에 대하여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만원이하의 罰金을 科함. (案 第 28 條)
- 타. 最初의 最低賃金은 勞動部長官이 1987年 7月 1日까지 審議를 要請하고 1987年 12月 15日까지 決定·告示하도록 함. (案 附則 第 3 條)

한국
한국

最 低 賃 金 法 案

第 1 章 總 則

第 1 條(目的) 이 法은 勤勞者에 대하여 賃金의 最低水準을 보장하여 勤勞者의 生活安定과 勞動力의 質的向上을 기함으로써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.

第 2 條(定義) 이 法에서 “勤勞者”, “使用者” 및 “賃金”이라 함은 勤勞基準法 第 14 條, 第 15 條 및 第 18 條에 規定된 勤勞者, 使用者 및 賃金을 말한다.

第 3 條(適用範圍) ①이 法은 勤勞基準法의 適用을 받는 事業 또는 事業場(이하 “事業”이라 한다)에 適用한다. 다만, 事業의 種類·規模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이 法은 船員法의 適用을 받는 船員 및 船員을 사용하는 船舶의 所有者에 대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.

第2章 最低賃金

第4條(最低賃金의 決定基準과 區分) ①最低賃金은 勤勞者의 生計費, 類似勤勞者의 賃金 및 勞動生產性을 고려하여 事業의 種類別로 區分하여 정한다.

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의 種類別 區分은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最低賃金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勞動部長官이 정한다.

第5條(最低賃金額) ①最低賃金額(最低賃金으로 정한 金額을 말한다. 이하같다)은 時間·日·週 또는 月을 單位로 하여 정한다. 이경우 日·週 또는 月을 單位로 하여 最低賃金額을 정하는 때에는 時間給으로도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.

②就業期間이 6月을 經過하지 아니한 18歲 未滿의 勤勞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最低賃金額과 다른 金額으로 最低賃金額을 정할 수 있다.

③賃金이 통상적으로 都給制 기타 이와 유사한 形態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있어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最低賃金額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

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最低賃金額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第6條(最低賃金의 效力) ①使用者는 最低賃金의 適用을 받는 勤勞者에 대하여 最低賃金額 이상의 賃金을 支給하여야 한다.

②使用者는 이 法에 의한 最低賃金을 이유로 종전의 賃金水準을 低下시켜서는 아니된다.

③最低賃金의 適用을 받는 勤勞者와 使用者 사이에 最低賃金額에 未達하는 賃金을 정한 勤勞契約은 그 部分에 한하여 이를 無效로 하며, 無效로 된 部分은 이 法에 의하여 정한 最低賃金額과 同一한 賃金을 支給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.

④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賃金은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賃金에 算入하지 아니한다.

1. 每月 1回이상 定期的으로 支給하는 賃金외의 賃金으로서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것

2. 所定의 勤勞時間 또는 所定의 勤勞日에 대하여 支給하는 賃金외의 賃金으로서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것

3. 기타 最低賃金額에 算入하는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勞動部長官이 따로 정하는 것

⑤第 1 項 및 第 3 項의 規定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
事由로 勤勞하지 아니한 時間 또는 日에 대한 賃金의 支給
을 強制하는 것은 아니다.

1. 勤勞者가 自己의 事情으로 인하여 所定의 勤勞時間 또
는 所定의 勤勞日의 勤勞를 하지 아니한 경우
2. 使用者가 정당한 이유로 勤勞者에게 所定의 勤勞時間
또는 所定의 勤勞日의 勤勞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

第 7 條(最低賃金의 適用 除外)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
로서 使用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勞動部長官
의 認可를 받은 者에 대하여는 第 6 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
한다.

1. 精神 또는 身體의 障碍로 勤勞能力이 현저히 낮은 者
2. 修習使用중에 있는 者
3. 職業訓練基本法에 의한 事業內 職業訓練 중 養成 訓練을
받는 者
4. 기타 最低賃金을 適用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
인정되는 者

第 3 章 最低賃金의 決定

第 8 條(最低賃金의 決定) ①勞動部長官은 每年 11 月 30 日까

지 다음 年度에 적용할 最低賃金을 決定하여야 한다. 勞動部長官이 最低賃金을 決定할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最低賃金審議委員會의 審議를 要請하고, 最低賃金審議委員會가 審議·議決한 最低賃金案에 따라 最低賃金을 決定하여야 한다.

② 最低賃金審議委員會는 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으로부터 最低賃金에 관한 審議要請을 받은 날로부터 90日이내에 이를 審議하여 最低賃金案을 勞動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勞動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最低賃金審議委員會가 審議하여 제출한 最低賃金案에 따라 最低賃金을 決定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30日이내에 그 理由를 명시하여 最低賃金審議委員會에 20日이상의 期間을 정하여 再審議를 要請할 수 있다.

④ 最低賃金審議委員會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審議要請을 받은 때에는 그 期間내에 이를 再審議하여 勞動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勞動部長官은 最低賃金審議委員會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한

再審議를 함에 있어서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員 3分의 2 이상의 賛成으로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當初의 最低賃金案을 再議決한 뒤에는 그에 따라 最低賃金을 決定하여야 한다.

第 9 條(最低賃金案에 대한 異議提起) ① 勞動部長官은 第 8 條 第 2 項의 規定에 의하여 最低賃金審議委員會로부터 最低賃金案을 제출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.

② 勤勞者를 代表하는 者 또는 使用者를 代表하는 者는 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最低賃金案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때에는 告示된 날로부터 14 日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에게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.

③ 勞動部長官은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가 理由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明示하여 第 8 條第 3 項의 規定에 따라 最低賃金審議委員會에 最低賃金案의 再審議를 要求하여야 한다.

④ 勞動部長官은 第 3 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審議를 要求한 最低賃金案에 대하여 第 8 條 第 4 項의 規定에 의한 最低賃金審議委員會의 再審議 · 議決된 最低賃金案이 제출될 때까지는 最低賃金을 決定할 수 없다.

⑤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를 代表하는 者 또는 使用者를 代表하는 者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第 10 條(最低賃金의 告示와 效力發生) ① 勞動部長官은 最低賃金을 決定한 때에는 14 日이내에 그 내용을 告示하여야 한다.

②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最低賃金은 다음 年度 1 月 1 日부터 效力を 발생한다. 다만, 勞動部長官은 事業의 種類別로 賃金交涉時期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效力發生 時期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第 11 條(周知義務) 最低賃金의 適用을 받는 使用者は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最低賃金을 그 事業의 勤勞者가 쉽게 볼 수 있는 場所에 揭示하거나 그외의 적당한 方法으로 이를 勤勞者에게 周知시켜야 한다.

第 4 章 最低賃金審議委員會

第 12 條(最低賃金審議委員會의 設置) 最低賃金에 관한 審議 기타 最低賃金에 관한 重要事項의 審議를 위하여 勞動部에 最低賃金審議委員會(이하 “審議委員會”라 한다)를 둔다.

第 13 條(審議委員會의 機能) 審議委員會는 다음의 機能을 遂行한다.

1. 最低賃金에 관한 審議 및 再審議
2. 最低賃金 適用事業의 種類別 區分에 관한 審議
3. 最低賃金制度의 發전을 위한 研究 및 建議
4. 기타 最低賃金에 관한 重要事項으로서 勞動部長官이 附議하는 사항의 審議

第 14 條(審議委員會의 構成等) ① 審議委員會는 勤勞者를 代表하는 委員(이하 “勤勞者委員”이라 한다), 使用者를 代表하는 委員(이하 “使用者委員”이라 한다) 및 公益을 代表하는 委員(이하 “公益委員”이라 한다) 各 9 人으로 構成한다.
② 審議委員會에 2 人の 常任委員을 두며 常任委員은 公益委員이 된다.
③ 委員의 任期는 3 年으로 하되, 連任할 수 있다.
④ 委員이 闕位된 경우 그 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.
⑤ 委員은 그 任期가 滿了된 경우에도 後任者가 任命 또는 委囑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職務를 遂行한다.
⑥ 委員의 資格, 任命과 委囑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第 15 條(委員長과 副委員長) ① 審議委員會에 委員長 및 副委員長 各 1 人을 둔다.

② 委員長과 副委員長은 公益委員중에서 審議委員會가 選出한다.

③ 委員長은 會務를 統轄하며 審議委員會를 代表한다.

④ 委員長에게 事故가 있는 때에는 副委員長이 職務를 代行한다.

第 16 條(特別委員) ① 審議委員會에는 關係 行政機關의 公務員중에서 3人이내의 特別委員을 둘 수 있다.

② 特別委員은 審議委員會의 會議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.

③ 特別委員의 資格 및 委囑등에 관하여 諸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第 17 條(會議) ① 審議委員會의 會議는 勞動部長官이 召集을 요구하는 경우, 在籍委員 3分의 1 이상이 召集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委員長이 諸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委員長이 召集한다.

② 委員長은 審議委員會의 會議의 議長이 된다.

③ 審議委員會의 會議는 이 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

외하고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.

④ 審議委員會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議決을 함에 있어서는 勤勞者委員 및 使用者委員 各 3分의 1 이상의 出席이 있어야 한다. 다만, 勤勞者委員 또는 使用者委員이 2回이상의 出席要求를 받고도 정당한 理由없이 出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第18條(意見聽取) 審議委員會는 그 業務를 遂行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關係勤勞者와 使用者 기타 關係人の 意見을 聽取할 수 있다.

第19條(專門委員會의 設置) ① 審議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事業의 種類別 또는 特定 事項別로 專門委員會를 둘 수 있다.

② 專門委員會는 審議委員會의 權限의 一部를 委任 받아 第13條 各號의 機能을 遂行한다.

③ 專門委員會는 勤勞者를 代表하는 委員, 使用者를 代表하는 委員 및 公益을 代表하는 委員 各5人이내의 同數로構成한다.

④ 第 14 條第 3 項내지 第 6 項, 第 15 條, 第 17 條 및 第 18 條의 規定은 專門委員會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. 이 경우 同 規定中 “審議委員會”는 이를 “專門委員會”로 본다.

第 20 條(事務局) ① 審議委員會에 그 事務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事務局을 둔다.

② 事務局에는 最低賃金의 審議등에 필요한 專門的인 사항을 調查·研究하게 하기 위하여 3人이내의 研究委員을 둘 수 있다.

③ 研究委員의 資格·委囑 및 手當과 事務局의 組織과 運營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第 21 條(委員의 手當等) 審議委員會 및 專門委員會의 委員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當과 旅費를 支給할 수 있다.

第 22 條(運營規則) 審議委員會는 이 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審議委員會 및 專門委員會의 運營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.

第 4 章 補 則

第 23 條(生計費 및 賃金實態등의 調査) 勞動部長官은 勤勞者
의 生計費와 賃金實態등을 매년 調査하여야 한다.

第 24 條(政府의 支援) 政府는 勤勞者 및 使用者에 대하여 最
低賃金 制度의 원활한 실시에 필요한 資料의 제공 기타 필
요한 支援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
第 25 條 (보고) 勞動部長官은 이 法의 施行에 필요한 범위 안
에서 勤勞者 또는 使用者에 대하여 賃金에 관한 사항을 보
고하게 할 수 있다.

第 26 條(勤勞監督官의 權限) ① 勞動部長官은 勤勞監督官으로
하여금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의 施行에 관
한 事務를 管掌하게 한다.

② 勤勞監督官은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權限을 行使하기 위
하여 事業場에 出入하여 帳簿와 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
있으며 기타의 物件을 檢査하거나 관계인에게 質問할 수 있다.

③ 第 2 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・檢査를 하는 勤勞監督官
은 그 身分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
보여야 한다.

④ 勤勞監督官은 이 法 위반의 罪에 관하여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行할者와 그職務範圍에 關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司法警察官의 職務를 行한다.

第 27 條(施行令) 이 法 施行에 관하여 諸요한 사항은 大統額 令으로 정한다.

第 5 章 罰 则

第 28 條(罰則) 第 6 條第 1 項 또는 第 2 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 年 이하의 懲役 또는 1 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併科할 수 있다.

第 29 條(罰則)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 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.

1. 第 11 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
2. 第 25 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偽報 告를 한 者
3. 第 26 條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要求 또는 檢查를 거부 ·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質問에 대하여 虛偽의 陳述을 한 者

第 30 條(兩罰規定) 法人の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の 代理 人 · 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の 業務에

관하여 第 28 條 또는 第 29 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그
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이나 個人에 대하여도 해당
條의 罰金刑을 科한다.

附　　則

第 1 條(施行日)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.

第 2 條(다른 法律의 改正) 勤勞基準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
다.

第 34 條 및 第 35 條를 削除한다.

第 110 條第 1 號중 “第 28 條, 第 35 條”를 “第 28 條”로
한다.

第 3 條(最初로 施行되는 最低賃金의 決定에 관한 經過措置)

① 勞動部長官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施行할 最低賃金의
決定을 위하여 1987 年 6 月 30 日까지 審議委員會를
構成하여 1987 年 7 月 1 日까지 審議委員會에 最低賃金
의 審議를 要請하여야 한다.

② 審議委員會는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審議要請을 받은
때에는 第 8 條第 2 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120 日 이내

에 이를 審議하여 最低賃金案을 勞動部長官에게 제출
하여야 한다.

③勞動部長官은 第 2 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議委員會로
부터 最低賃金案을 제출받은 때에는 第 8 條第 1 項 및
第 10 條第 1 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1987 年 12 月 15 日까
지 最低賃金을 決定·告示하여야 한다.

공연
극장